

일본 '에코투어리즘 추진법 (エコツーリズム推進法)' 의 개요

이 두 령 (일본입정대학 법학부 전임강사, 일본 주재 외국법제조사위원)

I. 들어가며

2003년 11월 환경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에코투어리즘 추진회의'¹⁾가 설치되어 일본에서의 에코투어리즘의 보급·정착을 위한 검토가 시행되었다. 에코투어리즘 추진회의는 관광 관련업계, 유식자, 관계부성 등으로 구성되어 정부와 민간의 제휴 아래 새로운 조직으로서 2004년 6월에 5개의 추진방책을 정리하였다.

먼저 '에코투어리즘' (ecotourism)이란 사고(思考)의 근저에는 자연, 환경 등의 자원을 해치지 않으며 자연을 대상으로 관광을 부흥시키며, 지역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생각(主義)이다.

자연의 생성과정이나 역사, 문화가 가지는 깊은 의미를 알기 쉽게 해설하며, 방문자(여행자)는 큰 감동을 얻는다. 이것이 경제행위로서도 성

립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역사, 문화를 존중하게 되며, 더욱이 행동으로 연결되어 성공하게 되면, 환경보호와 경제 순환에도 효과적이다.

본고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 지역에서의 창의 연구를 살린 관광의 진흥 및 환경보전에 관한 의식의 계발 등의 환경교육 추진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에 대해 개관하기로 한다.

II. 성립 배경

특히 이 법의 성립 배경은 최근 인간과 친밀한 환경에 대한 보호의식의 고양과 자연을 직접 접하고자 하는 욕구의 고조가 그 배후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으로 인해 지금까

1) 에코투어리즘 추진회의 <http://www.env.go.jp/council/22eco/gaiyo22.html>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

지의 패키지·통과형의 관광과는 달리, 지역 자연환경의 보전을 배려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 자연과 서로 접하는 ‘에코투어리즘’이 추진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움직임의 폐해로 인한 예로, 지역 환경에의 배려가 부족한 단순한 자연체험 투어가 에코 투어로 불리거나 관광 활동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악화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에코투어리즘’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법률이 제정되게 된 것이 전체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에코투어리즘 추진법’²⁾이다.

Ⅲ. 주요 내용

에코투어리즘을 권장하려는 목적에는 관광 여행자가 자연 관광자원에 대해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안내 또는 조언을 받으며, 해당 자연관광자원의 보호를 배려하면서 해당 자연관광자원과 접촉하며, 이러한 관광활동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자연에 대해 이해하는 활동도 포함된다(본 법 제2조 제2항).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자연관광자원’이란 ① 동식물의 생식지 또는 생육지 그 외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관광자원, ②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풍속 관습 그 외의 전통적인 생활 문화와 관련된 관광자원을 의미한다(제2조 제1항).

그리고 일본 ‘에코투어리즘 추진법’의 기본이념으로는 자연 환경에의 배려, 관광 진흥에의 기여, 지역 진흥에의 기여, 환경 교육에의 활용에 있다(제3조, 기본이념 규정).

▶ 기본이념 ◀

- 자연 환경에의 배려
- 관광 진흥에의 기여
- 지역 진흥에의 기여
- 환경 교육에의 활용

1. 법의 목적과 의의

이 법률은 에코투어리즘이 자연환경의 보전, 지역에 있어서의 창의적인 연구를 살린 관광사업의 진흥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의식의 계발 등의 환경 교육의 추진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기에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기본이념, 정부에 의한 기본방침의 책정 그 외의 에코투어리즘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에코투어리즘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인 동시에 효과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현재와 장래에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エコツーリズム推進法, 2007年=平成19年6月27日, 法律第105號로 제정되었다.

2. 법률의 취지와 추진방책

이 법률이 추구하는 것은 지역의 자연 환경의 보전을 배려하면서, 지역의 창의적인 연구를 살린 ‘에코투어리즘’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한 4가지의 구체적인 추진방책을 정하며, 상술한 에코투어리즘을 통한 자연환경의 보전, 관광 진흥, 지역 진흥, 환경 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려는 기본이념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 법률의 취지 ◀

- 정부에 의한 기본방침의 책정
- 지역의 관계자에 의한 추진협의회의 설치
- 지역의 에코투어리즘 추진방책의 책정
- 지역의 자연관광자원의 보전

즉, 기본방침을 책정하여야 하는바, 정부는 기본이념에 따라 에코투어리즘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구체적으로 기본방침은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 ① 에코투어리즘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 방향
- ②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에코투어리즘 추진협의회에 관한 기본적 사항
- ③ 제4조 제2항의 에코투어리즘 추진 전체 구상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 사항

- ④ 제6조 제2항의 에코투어리즘 추진 전체 구상의 인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다.

그 이외 생물의 다양성의 확보를 위해 에코투어리즘의 실시를 함에 있어 배려해야 할 사항과 에코투어리즘의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이 존재할 경우에도 기본적 사항을 정한다(제4조 제2항 제5호).

3. 정부에 의한 기본방침의 책정

‘에코투어리즘 추진법’에서는 관련 관청에 대해 기본방침의 책정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본법의 주요 주무대신(主務大臣)으로는 환경대신(環境大臣), 국토교통대신(國土交通大臣), 농림수산대신(農林水産大臣), 문부과학대신(文部科學大臣)이다(제18조). 즉, 환경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미리 문부과학대신 및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방침의 안을 작성하여, 내각회의(內閣會議)의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그리고 환경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기본방침의 안을 작성할 때는 미리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제4조 제4항).

또한 환경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각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기본방침을 공표해야 하며(제4조 제5항), 기본방침은 에코투어리즘의 실시 상황을 근

3) 한국의 시읍면에 해당한다.

거로 하여 5년마다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제4조 제6항).

4. 지역의 관계자에 의한 추진협의회의 설치

시정촌(市町村)(‘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시정촌³⁾의 구역 중 에코투어리즘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마다, 다음에서 규정하는 사무를 실시하기 위해, 해당 시정촌외, 특정사업자, 지역주민, 특정비영리 활동법인 등 자연관광자원 또는 관광에 관계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토지의 소유자 등 그 외의 에코투어리즘에 관련하여 활동에 참가하는 자(이하 ‘특정사업자 등’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공공단체로 구성되는 에코투어리즘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조직할 수 있다(본 법 제5조 제1항).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실시한다(본 법 제5조 제2항). ① 에코투어리즘 추진 전체 구상을 작성한다. ② 에코투어리즘의 추진과 관련되는 연락 조정을 실시한다.

그리고 시정촌은 인정 전체 구상에 따라 후술하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특정자연관광자원이 다수의 관광 여행자 그 외의 사람의 활동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해당 특정자연관광자원의 소재하는 구역에의 출입에 대해 미리 해당 시정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취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그 소재하는 구역에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특정자

연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주무성령(主務省令)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제11조).

▶ 지역의 역할 ◀

- 시정촌은 사업자, NPO, 전문가, 토지소유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한 협의회를 조직하고 협의회는 에코투어리즘 추진 전체 구상을 작성하여 에코투어리즘을 추진

5. 에코투어리즘의 추진 전체 구상

기본방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 제1~6호).

- ① 에코투어리즘을 추진하는 지역
 - ② 에코투어리즘의 대상이 되는 주된 자연관광자원의 명칭 및 소재지
 - ③ 에코투어리즘의 실시 방법
 - ④ 자연관광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강구해야 하는 조치(해당 협의회와 관련되는 시정촌의 장이 제8조 제1항의 특정 자연관광자원의 지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취지 해당 특정 자연관광자원의 명칭 및 소재하는 구역 및 그 보호를 위해 강구해야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 ⑤ 협의회에 참가하는 자의 명칭 또는 이름 및 그 역할 분담
 - ⑥ 그 외 에코투어리즘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특정자연관광의 지정에 관한 내용은 전체 구

상에 대해 제6조 제2항의 인정을 받은 시정촌은 인정 전체 구상에 따라서 관광여행자 그 외의 사람의 활동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자연관광자원(풍속 관습 그 외의 무형의 관광자원을 제외한다)으로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특정 자연관광자원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관광자원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의한다(제8조 제1항).

6. 전체구상의 인정(내용과 주지의무)

전체 구상의 인정·보호 조치로서 시정촌은 주무대신에게 전체 구상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정된 전체 구상과 관련되는 에코투어리즘에 대해서는 정부가 홍보에 노력함과 동시에 각종 인·허가 등으로 배려한다(제6조). 주무대신은 인터넷의 이용 그 외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에코투어리즘에 참가하려고 하는 관광여행자, 그 외의 자에게 인정된 전체 구상의 내용에 대해 주지시킬 의무를 가진다(제7조 제1항).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인정된 전체 구상을 작성한 협의회의 구성원인 특정사업자가 해당 인정 전체 구상에 근거하는 에코투어리즘과 관련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그 외의 처분을 요구했을 때에는 해당 에코투어리즘과 관련되는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히 실시되도록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제7조 제2항).

그리고 시정촌은 인정된 전체 구상에 근거하여 보호를 도모해야 할 특정자연관광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제8조). 구체적으로는 오손(汚損)·손상(損傷) 등의 금지, 이용자의 수의 제한 등이 가능하다(제9조).

7. 그 외의 내용

- ① 주무대신은 매년, 협의회의 활동상황을 정리해 공표해야 한다(제11조 활동상황의 공표).
- ② 주무대신은 시읍면에 대하여 그 협의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12조 활동 상황의 보고).
- ③ 주무대신은 광역의 자연관광자원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활동 그 외의 협의회의 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협의회의 구성원에 대해 필요한 기술적 조언을 실시할 수 있다(제13조 기술적 조언).
- ④ 주무대신은 자연관광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도모하며, 자연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또는 조언을 실시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에코투어리즘의 실시 상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분석 및 그 결과의 제공을 실시한다(제14조 정보의 수집 등).
- ⑤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에코투어리즘에 관해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5조 홍보 활동 등).
- ⑥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에코투어리즘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6조 재정상의 조치 등).

- ⑦ 중앙정부는 환경성,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그 외의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에코투어리즘 추진연락회의를 마련하여 에코투어리즘의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연락 조정을 실시한다(제17조 에코투어리즘 추진연락회의).

IV. 마치면서(평가와 시사점)

향후 에코투어리즘 추진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에코투어리즘의 실시를 위해 일본 정부는 에코투어리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방침을 작성에 착수하고 있다.

그리고 시정촌이 작성한 지역마다의 전체 구상은 주무대신에 대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본방침이 적합할 경우 인정되게 된다. 즉, 중앙정부는 전체 구상의 인정을 받은 시정촌에 대해 홍보를 위한 노력 등 지역의 에코투어리즘 실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 법의 목적은 관광활동을 이용하여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역사, 문화를 존중하며, 이러한 경제활동이 행동으로 연결되어 성공하게 되면, 환경보호는 물론 지역사회의 경제의 순환에도 효과가 있다.

이는 경영학(원래는 군사학에서 출발)에서 대두되고 있는 모두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상호가 win-win⁴⁾하는 소위 '윈-윈(win-win)효과'를 가져온다. 즉, 자연과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보호하며, 중앙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지역의 발전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의식을 위해 '일거양득(一舉兩得)'의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법은 전체적인 입법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시사점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라는 시대의 조류에 지나치게 편승하는 실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한국사회에 도입을 고려한 경우 성숙된 행정의 계획과 환경에 대한 의식을 경제효과에 비례하여 형량한 후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쌍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전략)을 의미한다.